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3103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31032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126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변론 종결 2024. 2. 28.

판결 선고 2024. 3. 2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12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4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1.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25,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3.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3. 4. 4.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5. 15.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의 월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9. 5. 원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서 2019년 제5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9년 9월 5.일 금 사천만 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0년 3월 5.일에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정하고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9. 9. 11. 원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9. 10. 7. 피고의 계좌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1억 원(= 4,000만 원 + 6,000만 원)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1.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인서(이하 '이 사건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등부 2019년 제1049호로 인증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투자확인서

E의 대표인 원고는 피고(의뢰인)에 대한 투자약정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또한 이자관리 및 원금회수를 담당한다.

1. 당사가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투자금액: 금 일억 이천만 원정(W120,000,000)

투자기간: 2020. 03. 05. 만기 후 원금 전체상환

2. 이자 지급 내용

매월 10% 이자 지급

3. 투자자: 피고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9. 10. 22. 3,900만 원, 2020. 2. 21. 500만 원, 2020. 2. 24.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9. 11. 6.부터 2020. 4. 1.까지 피고의 계좌로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2억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9. 11. 06.	1,200만 원	2020. 02. 05.	1,000만 원
2019. 12. 07.	600만 원	2020. 02. 25.	200만 원
2019. 12. 11.	600만 원	2020. 02. 26.	400만 원
2019. 12. 12.	500만 원	2020. 02. 29.	500만 원
2019. 12. 15.	700만 원	2020. 03. 06.	1,000만 원
2019. 12. 24.	1,600만 원	2020. 03. 19.	1,500만 원
2019. 12. 26.	1,600만 원	2020. 03. 20.	500만 원
2020. 01. 06.	1,200만 원	2020. 04. 01.	5,000만 원
2020. 01. 07.	2,000만 원	합계	2억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 5.부터 2020. 2. 24.까지 송금한 합계 1억 6,6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므로 그 계약상 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초과 이자 상당액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충당하면 원금을 소멸시키고도 남은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부당이득금 33,325,909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송금액의 법적 성격

1)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

수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반면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란 차주가 대주로부터 돈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투자자 내지 대주의 사업에의 관여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받을 당시 피고에게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투자', '수익금'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 확인서의 표제와 그 내용에 '투자'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금의 반환을 보장받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게 되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점, ② 이에 따라 2019. 9. 5. 피고가 최초로 송금한 4,0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원금에 대한 대가, 즉 원금에 대한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액수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투자계약의 수익분배 방법에 따라 지급된 투자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수익분배 방법과 비율, 손실의 분담 등에 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금 손실 또는 수익금 감소의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라는 문언이

기재된 이 사건 투자확인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투자'라는 문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시설업체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자(使者)로서 피고의 돈을 송금 받아 위 태양광시설업체에 전달하고 피고에게 수익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태양광시설업체의 상호는 물론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업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그 사업에 피고가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초 송금한 4,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20. 3. 5.까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투자확인서를 교부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의 사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이자제한법 제2조 제3, 4항에 의하면, 계약상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할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변제액 2억 1,100만 원(=2019. 10. 7. 자 변제액 1,000만 원 + 2019. 11. 6.부터 2020. 4. 1.까지의 변제액 2억 100만 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해당 대여원금 및 그 다음 대여원금에 순차 충당하면, 별지 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대여원금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2,942,656원(=원고의 변제액 211,000,000원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액인 위 표 중 '발생 이자'란 해당 금액 합계 12,057,344원

- 이 사건 송금액 1억66,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942,6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4. 2.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334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청구를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세영

판사조세진

판사김래니

별지